

춘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538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53894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소6296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장준형

변론종결 2021. 9. 2.

판결선고 2021. 11. 25.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소6296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32,000원 및 그 중 16,632,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4.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3.부터 각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소개로 2018. 6.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BMW740d(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선납금 5,000만 원, 월 대여료 3,368,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세 별도), 대여 기간 2018. 7. 27.부터 2021. 7. 27.까지(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자동차 대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4조(대여요금의 내역)

4-1) 대여요금의 차량비, 보험료의 자동차세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5조(대여요금의 정산)

5-1) 차량대여료는 월 단위로 정산한다.

5-2) 매월 말일에 청구하며, 원고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 정산한다.

5-3)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월 단가를 일할 계산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11-1)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제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최소 1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11-2) 렌트카의 사용기간은 계약기간이며, 본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사용으로 임차인은 이로 인한 일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11-3) 피고는 원고가 차량을 사용하는데 계약상의 조건위반 및 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을 미이행 시는 즉시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11-4)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중도 해지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기간 대여료 총액의 1/4을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단, 부가세는 제외한다).

11-5)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고객을 확보하여 계약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제12조(계약의 해석)

12-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준하여 이행기로 한다.

12-2) 11조 및 12조 제1항 이외의 사항에 상호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8. 6. 14. 2,000만 원, 2018. 7. 13.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선금금의 일부로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선금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7. 28.경부터 2018. 8. 6.경까지 원고에게 선금금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원고의 첫 달 차량임대료 및 선금금 이행의무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8. 8. 7.경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계약은 해제1)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금금 3,000만 원에서 2018년

7월분 임대료 3,368,000원을 공제한 26,632,00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선급금 2,000만 원을 2018. 8. 7.까지 지급하기로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7. 계약 해제 통보와 동시에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해갔다. 이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전 통보해야 한다는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회수해간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 11조 4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1/2 정도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선급금 지급기일인 2018. 7. 13.까지 5,000만 원의 선급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임대료 내지 선급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

2)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4항에 의해 잔여기간 대여료 총액의 1/4 금액인 29,978,568원을 위약금으로, 이 사건 차량의 원상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7,230,080원을 수리비로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위약금 채권과 수리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선급금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7. 13.까지 미지급 선급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일 원고가 위 기일까지 나머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나머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늦어도

2018. 8. 7.자 피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 및 C와 함께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8. 6. 27. 선급금 지급과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선급금 지급기일을 2018. 7. 13.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D : 그러니까 7월 13일까지 만약에 미지급 선급금이 다 안들어오면 저는 분명히 C과장에게 받아요. C과장에게 안 받으면 분명히 저는 제가 사장님(원고)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차를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저는 7월 13일부터 7월 말일날 까지에 대한 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이야기가 들어온 것도 없고 저는 지금 사장님한테 처음 들었으니까.

원고 : 자 그러면 7월 13일, 만약에 6월 30일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7월 13일 내가 1,500이라도 만 췌오면 나머지 그 어디 좀 빌릴 수 있는교

C : 그렇죠. 네

D : 저는요 사장님 7월13일까지만 저는 3,000만 원 딱 들어오면 끝이에요.

원고 : 나는 이거, 나는 전화오고 나 이런 자체가 싫다 말ियो.

②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선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8. 7. 28.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기 전인 2018. 8. 7.경까지 사이에 미납 선급금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여러 번 보냈다.

③ 피고가 2018.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남아 있는 물건을 가져가라는 연락을 하였더니 원고는 “네 짐 택시로 보내줘요. 주소 찍어줄테니까” 라고 대답하여 피고의 이 사건 차량회수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남은 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원고의 주소지를 불러주었다.

④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1항은 최고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5일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3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차량회수가 채무불이행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기일이 2018. 8. 7.로 연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금금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한 달분 대여료 3,368,000원을 공제한 26,6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4.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동채권의 성립

1)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4항에 의해 잔여기간 대여료 총액의 1/4 금액인 29,986,064원[= {(3,368,000원 x 35개월) + (3,368,000원 x 19일/31일)} x 1/4] 중 피고가 구하는 29,978,568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위약금은 과다하므로 감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신차를 약정 기간 동안 대여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의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 피고와 같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중고차를 반환받게 되어 이를 다시

대여하여 소득을 올리기 어려워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중도해지위약금을 약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이 3년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4항에서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중도 해지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기간 대여료 총액의 1/4을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쌍방의 지위 및 위 규정의 목적·내용·동기에 특별히 경제적 약자를 불리·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공정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② 일반적으로 자동차 장기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부가가치세는 제외)를 일할 계산한 ‘잔여 임대료’에 위약금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잔여계약 기간에 따라 잔여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더 높은 위약금율이 적용된다. 이 사건 계약서는 위와 같은 차등구간 없이 일률적으로 25%의 위약금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같은 영업을 하는 통상의 자동차대여회사가 최소 25%에서 최대 50%의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을 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총 36개월 약정기간 중 잔여계약 기간이 35개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5%의 위약금율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9,978,568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 적상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의 성립 이후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이행의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된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등 참조).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18. 8. 8. 성립하였고,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18. 8. 7.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8. 8. 8. 위 두 채권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고의 2021. 8. 31.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26,632,000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29,978,568원은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중선, 판사 조미연, 판사 김현정

1)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는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민법 제543조), 이와 달리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고 한다(민법 제550조). 계속적 계약이란 당사자들이 정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차량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위 사용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곧바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자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계속적 계약이 해지되면 기존에 이행된 급부까지 원상회복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해제와는 달리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중 계약의 이행으로 당사자 쌍방이 만족을 얻은 부분까지 소급적으로 무효화 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처럼 이미 이행한 계약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그동안 계약으로 형성된 당사자들의 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는 2018. 6.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원고는 2018. 8. 7.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 수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장래에 한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지의 법리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행하여 판단한다.

2) 원고는 각 선급금을 지급한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고, 해지권의 행사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할 뿐이고, 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제2항과 같은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각 선급금을 지급한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